

91.
9.1

'성폭행 응징' 선언적 의미 커

김부남씨 집행유예 판결 안팎

성폭행범을 보복 살해한 김부남씨에 대해 전주지법이 지난 30일 살인사범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빈번히 일어나는 성폭행범에 대한 응징에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를 가진 판결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김부남씨사건의 발생 동기가 성폭행에서 비롯된 것이고

은 실정법의 테두리라는 제약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함께 지니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9살때 당한 성폭행으로 21년동안 피해의식 속에서 신음해왔고 결혼생활이 파탄에 빠지는 등 김씨의 삶 자체가 파괴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죄국가에서 개별적인 복수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재판부의 시각에 대해

비록 김씨가 실정법상 살인죄를 범했지만 그 살인의 원인행위가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이고 그로 인해 20여년동안 인고의 삶을 강요받은 만큼 자연법적 차원에서 당연히 무죄가 내려져야 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항소하기로 하는 한편 오는 9월 정기국회에 특별법 시안을 낸 뒤 내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전국의 여성단체와 힘을 합쳐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규

실정법 한계 "개별적 복수 용납못해"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 촉매제 될듯

보면 일반인에게 경각돼 있는 것처럼 비치는 법원이 여성정조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그동안 김부남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성폭행에 관한 단일법 제정을 추진중인 김부남 사건 대책위원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회 등 여성단체들의 활발한 움직임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

전북여성의 전화, 기독교여자청년회, 전북대총여학생회 등 도

내 11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김부남 사건 대책위'는 "남성 위주의 그릇된 시각을 다시한번 보여준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공동의장 박상희(45·전주 나눔교회) 목사는 "여자가 폭력으로 순결을 잃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21년 동안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순간 순간을 살아온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이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정조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방지법 등으로 흩어져 있어 법운용과 집행절차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성폭행 피해자가 오히려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의 전화 신윤옥(30) 사무국장 대행은 "남성 중심의 법과 사고 때문에 강간, 가정과 직장에서의 구타 등 여성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주=장세환 기자>

91.9.11

"성폭행응징 구속부당"

대전·전주 여성계 법감정 외면처사...석방요구

【대전=순규성 기자】속보=검찰이 자신의 생질을 성폭행한 범인을 찾아 '보복폭행'한 외삼촌을 구속하자 대전지역과 전주의 김부남사건대책위원회 등 여성계가 법감정을 무시한 가혹한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 9일 자신의 생질인 ㅈ(14·여·중3)양을 두차례나 성폭행해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키게 한 범인의 집으로 찾아가 쇠파이프와 흉기로 범인을 폭행해 전치 11주의 상처를 입힌 김영철(28·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씨를 폭력행위 등의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0일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대

전·전주지역 여성계쪽은 외삼촌의 행위가 보복폭행이 아니라 대항력이 거의 없는 여성들을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나서 '제2의 김부남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남여민회쪽의 전혜린(28·여) 총무는 "폭행당한 소녀가 정신분열증세까지 보이는 등 자칫 일생을 망치는 상황에서 외삼촌의 행위에 대한 법적응용은 소녀의 피해상황에서 출발했어야 했다"며 "특히 범인들을 검찰에 신고해 도주 및 증거인멸이 회박한 외삼촌을 구속까지 한 것은 성폭력의 불안에 떠는 여성들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전주의 성폭력피해자 김부남사건대책위원회쪽은 김씨의 폭행은 단순보복이 아닌 정당방위라고 주장, 김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 YWCA 김공자(44·여) 총무도 Y의 공식입장으로 "여성에 대한 성범죄는 살인과 맞먹는 행위로 여성 모두 공동된 분노감을 갖고 있다"며 "그러한 분노를 집행한 외삼촌의 행위를 두고 구속수사는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지검 이준명 검사는 "사적인 보복을 금지한 현행법위지와 사건발생 5일만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